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 : 제1291호
- 나. 발 의 자 : 아이수루 의원(찬성자 15명)
- 다. 발의일자 : 2023년 10월 11일
- 라. 회부일자 : 2023년 10월 23일

2. 제안이유

- 서울시립미술관의 시민큐레이터 사업은 수혜를 누리는 시민의 범위가 제한적이고, 비용 대비 사업의 효과성에 한계가 있다는 사유로 종료된 사업임.
- 그러나 현행 조례의 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 사항에 해당 사업이 명시되어 있어, 조례와 실제 지원할 수 있는 사업 간의 혼동을 일으킬 여지가 있음. 이에 서울시립미술관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현행 사업에 맞게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음.

3. 주요내용

- 가. 서울시립미술관 사업 현행화에 따라 종료된 사업을 삭제함(안 제36조제2호).

4. 검토의견(수석전문위원 주우철)

가. 개정안의 개요

- 서울시립미술관은 조례를 근거로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해 민간에 각종 행정적·재정적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, ‘시민큐레이터 운영 사업’은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져 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 범위에서 이를 삭제하기 위해 발의됨.

나. ‘시민큐레이터 운영 사업’의 폐지(안 제36조제2호)

- 개정안은 ‘시민큐레이터 운영’ 사업을 지원 범위에서 삭제하고 있음.

< 신·구조문 대비표 >

현 행	개 정 안
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 관장은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,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 1. (생략) 2. 시민큐레이터 운영	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<삭제>

- 「지방재정법」 제17조에 따르면 “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”에는 보조금 지출 근거를 조례에 규정할 것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.

- 이에 따라 서울시립미술관은 민간 신진작가의 창작의욕 증진과 전시활동 활성화, 미술문화의 대중화와 저변확대를 위한 ‘신진 미술인 지원 프로그램’ 과 ‘시민큐레이터 운영’ 사업을 조례에 반영해 2015년부터 지속해 왔음.
- 그러나 ‘시민큐레이터 운영’ 사업은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시 수혜를 누리는 시민이 제한적이고 사업의 효과성이 부진한 관계로 전액 삭감됨에 따라, 이를 사업지원 범위에서 삭제해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.

의안번호
1291

서울특별시립미술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발 의	제 안 자	제안일자	소관 상임위
		아이수루 의원	'23.10.11.
주요내용	<p>○ 서울시립미술관의 종료된 사업을 삭제함</p> <p>제36조(개인 및 단체 등의 지원) 관장은 미술문화 저변확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며,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</p> <p>1. (생 략)</p> <p>2. 시민큐레이터 운영</p>		
추진경과	○ '23.10.11. 일부개정조례안 발의		
부 서 검토의견	원안가결(○) / 수정가결 () / 부결() / 보류()		
쟁점사항 (의회동향, 문제점 등)	○ '22년까지 시립미술관에서 진행했던 시민큐레이터 사업이 '23년 이후로 종료됨에 따라 시민큐레이터 운영을 담은 현 조례를 정비할 필요가 있기에 조례 개정에 동의함.		
대응방안			
상 임 위 처리결과			
향후계획			
담당부서	박물관과	팀장 노은영(☎2133-4183)	담당 강주연(☎2133-4186)